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산업보건 주요뉴스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시행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마련,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시행 2013. 6. 19),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013.2.7 입법예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시대상인 고용형태와 공시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 및 소속 외 근로자 등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을 공시토록 하되 제도 시행초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시 첫해인 2014년에는 해당연도, '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 고충, 원청·사용사업주가 처리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보건 주요뉴스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원청·사용사업주가 처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충처리의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조직의 외부화로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가 늘었으나 이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사업장 안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의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 노사협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근로조건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원청·사용사업주가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게 하고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장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생산공동체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개칭한다.

사업장협의회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고, 사업장 안에 과반수노조나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과반수노조 대표는 공동의장이 되어 복수노조 제도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된다.

한편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근로자위원 주도로 선출위원회를 구성, 이들이 선거 공고·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출절차 전반을 맡아 일반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선출된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권한과 그 행사방법도 명문화한다.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협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권한 행사방법 등에 관한 입법이 미비해 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 개정법률안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타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 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도 보고·협의·의결 사항 등으로 복잡했던 것을 협의사항으로 통일하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 (3개월마다 1회→1년 4회)하는 등 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2013년 5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보건취약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무료로 받는다**

- 안전보건공단, 1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비용지원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수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검진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비용은 측정과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실시기관에 비용을 지불한다.

신청은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상반기는 2월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는 6월에 신청을 받는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690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였고 75,61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하였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과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은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비용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문의바란다.”고 말했다. ☎